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어린이용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환경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장난감, 문구용품 등 어린이용품 제조·수입·판매자는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및 표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환경보건법」은 주무관청이 환경부이며,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여 위협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제정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의 관리대상 물질**은 **사용제한 4종**(DINP,DNOP, TBT, 노닐페놀)과 위해성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 135종**임.

- **(사용제한 4종)** 「환경보건법」 제4조4에 따라 사용제한 고시된 물질로서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과 제조업자의 관리 의무사항이 동시에 적용됨에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 저감을 위한 대상으로 선정

[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명칭 및 제한내용

고유 번호	환경유해인자 명칭 (영문명, CAS 번호)	제한내용	용도
12-9-1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Di-n-octyl phthalate; DNOP, 000117-84-0)	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9.90×10-1 ㎍/cm2/min,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5.50×10-2 ㎍/cm2/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
12-9-2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isononyl phthalate; DINP, 028553-12-0)	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4.01×10-1 ㎍/cm2/min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2.20×10-2 ㎍/cm2/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
12-9-3	트라이뷰틸 주석 (Tributyltin compounds, 688-73-3)	트라이뷰틸 주석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용을 금지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목재 제품)
12-9-4	노닐페놀 (Nonylphenol, 025154-52-3)	노닐페놀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용을 금지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잉크 제품)

○ **(화학물질 135종)** 「환경보건법」 제4조4에서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에 포함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를 정하였으며, 어린이용품 생산 기업은 자사의 생산·판매제품의 환경유해인자 사용저감 자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 목표 대상이 됨

○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용품 범위는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어린이용품에 적용하며, 세부 어린이제품의 분류는 아래 [표]와 같음.

[표] 어린이용품 대상분류

대분류	소분류	제품군
완구류	유아용장난감	오뚝이, 딸랑이, 삑삑이, 치아발육기, 모빌류, 촉각놀이완구
	놀이용장난감	플라스틱인형, 봉제인형, 플라스틱장난감, 블럭류, 목재완구, 점토완구, 가루놀이용품, 풍선류
	교육용완구	교구놀이, 퍼즐류, 실험 · 학습완구
	게임기구	카드게임, 보드, 전자게임, 기타 게임도구
	승용완구	자동차, 유아자전거, 소서, 기타 승용완구
	미디어완구	악기류, 영상완구, 음향완구
	롤플레이완구	변장용품, 무대놀이, 소도구
	물놀이용품	튜브, 물놀이용공, 물안경, 목욕완구, 기타 물놀이도구
	악세서리	팔찌, 반지, 목걸이, 귀걸이, 핀, 머리장식품, 발목장식품, 소매장식품, 기타 어린이용 장신구류
생활용품	수유용품	젖병, 젖꼭지, 유축기, 젖병소독기, 분유케이스, 비닐팩
	위생용품	기저귀, 물티슈, 칫솔, 치아티슈(유아용), 면봉, 타올류, 손수건
	식품용기	식판, 그릇, 보관용기, 도시락, 스푼세트, 물통, 컵
	화장품	로션 · 크림, 파우더류, 오일류, 메이컵류, 립케어, 향수
	세정제	샴푸, 바스, 비누류
	안전용품	카시트, 어린이보호장치류
	승용제품	유모차, 보행기, 기타 캐리어
	의류/가방류	속옷, 가운류, 외출복, 신발, 가방류
	가구	침대, 책상, 의자, 옷장, 서랍장, 기타 어린이용 가구
	스포츠/여가용품	공, 글러브, 자전거, 롤러스케이트류, 스케이트보드, 씽씽카, 야외용매트, 기타 어린이 운동용품
문구/도서류	문구용품	공책류, 볼펜, 샤프 · 연필, 싸인펜, 지우개, 수정액, 풀, 접착제, 가위, 필통, 기타 문구용품
	회화용품	물감, 크레파스, 색연필류, 파스텔, 팔레트
	공예용품	종이접기 · 공예, 점토공예, 자수공예, 비즈공예, 조각용품, 모형제작도구, 색종이류, 기타 공예용품
	도서류	그림책, 스티커북, 색칠책, 스케치북, 학습지류
놀이기구	실내놀이기구	미끄럼틀, 그림벽타기, 에어바운스, 놀이용집
	물놀이기구	실내 물놀이욕조
	놀이방매트	실내 놀이용 바닥매트

○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된 어린이제품에 적용되며,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의 대상제품의 범위는 어린이용 플라스틱제품, 어린이용 목재제품, 어린이용 잉크제품이 사용제한 대상 제품에 해당

- 2015년도 이전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등 KC를 받은 제품의 경우 2015년 이후 해당 제품을 재생산 할 경우 제품의 특성이 바뀔 우려가 없다면 기존 성적서를 인정하나, 원부자재 등을 변경하여 제품의 특성이 바뀔 우려가 있다면 재분석한 성적서 필요

○ 지난 12월 3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개정고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존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중복규제 관련 내용이 개선되었음

- 표시사항 관련하여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4종(DINP, DNOP, TBT, 노닐페놀)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표시

- 측정 결과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되어 있으면 해당 유해인자 명칭과 함유량을 mg/kg 또는 %로 표시

- 정량한계 미만 값으로 측정된 경우는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불검출'로 표시하며 관련 예시는 아래 표시사항과 같음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유해인자 표시사항

물질	함량	기준	
DNOP	불검출	전이량 μg/㎠/min	경구 9.90×10^{-1} 경피 5.50×10^{-2}
DINP	불검출		경구 4.01×10^{-1} 경피 2.20×10^{-2}
TBT	해당사항없음	0.1%	
노닐페놀	0.02%	0.1%	

<표시사항 예시>

○ 상기 표시는 최소 판매단위마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환경유해인자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표시하여야 함

- 용품의 크기 및 특징 등에 의해 최소 판매단위마다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용품에 표시가 가능

- 사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 내용을 인쇄하거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함

○ 또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허용 기준을 준수한 어린이 용품은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DnOP, DINP)의 제한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관련고시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12월 10일 환경부]

〈어린이제품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규제 개선 내용〉

부 처 (관련법)	현행 기준		개정 기준
산업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제품 : DEHP, DBP, BBP, DIDP, DnOP, DINP (6종) •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 : DEHP, DBP, BBP (3종)	➡	DEHP, DBP, BBP, DIDP, DnOP, DINP (6종)
환경부 (환경보건법)	DnOP, DINP (2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우선 적용*

○ 관련하여 그 동안 부처별 이중규제 해소로 인한 시험·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해당 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 가능하며 기업 자체 분석이 가능할 경우 자가 검증 성적서도 인정되며, 검사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음